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외교부 소관
 - 통일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남북협력기금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1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19.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2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30)
2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22.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2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24.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5.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26.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27.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8.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9.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3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5)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7)

-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65)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4)
4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4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4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6.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47.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48.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최소연 외 50,9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7)
49.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6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6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다. 남북협력기금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0) 6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6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6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6
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6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6
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6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6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6

1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6
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	6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	6
1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6
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6
1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	6
1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	6
19.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6
2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 번호 2203230)	6
2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6
22.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7
2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	7
24.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7
25.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	7
26.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7
27.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7
28.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7
29.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7
3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 번호 2203078)	7
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7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82)	7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	7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7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	7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7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25)	7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83)	7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947)	7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765)	7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54)	7
4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7
4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7
4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7
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8
46.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8
47.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8
48.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최소연 외 50,9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7)	8
49.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현안보고	8

(09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과 함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에 재외공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이 모두 취합이 되어서 각 의원실 메일로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다 건설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이재강 위원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차지호 위원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및 현황보고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내일 8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1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1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1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19.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2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3230)

2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22.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2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24.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5.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26.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 번호 2204644)
27.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8.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9.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3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8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25)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18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7)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5)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54)
4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4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4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2)

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6.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6)
47.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48.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최소연 외 50,9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7)
49.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현안보고

(09시08분)

○위원장 김석기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4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11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2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과 함께 의사일정 제1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23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5.2% 감소한 3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4059억 원, 기본경비 2285억 원, 주요 사업비 3조 6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2조 225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8262억 원, 일반사업비 779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출 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중심의 개발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증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전략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전략적·선
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최 정상회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국제
기구 위상, 국제기구 재정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
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년 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논의 의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업무 참여 기
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하여 공공외교·경제외교 현장 체
험 기회를 제공하며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파견 인력도 확대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국
제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으로 한
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각종 자격취득 및 직종요건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연령 제한
을 완화하여 청년 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
괄 정비 법안으로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해 18세가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재원 확
보가 어려워지는 등 불안정성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글
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2019년 협상을 개시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최종 타결이 선언된 후 작년 9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대 국회에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올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의 핵심광물 부존국이자 인구 1억 1000만 명의 높은 소비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한국-필리핀 FTA가 타결되면 개방 수준 증가에 따라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확대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획기적인 수출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은 동 FTA 비준 동의를 완료하고 필리핀 측 국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동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 2025년 1월까지 두 번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양국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6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여 모로코와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르완다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조세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르완다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해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세르비아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연장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안정과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을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이 가결되어 우리나라가 UN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해 파견 중인 동명부대에 대해서는 이후 현안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 및 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293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다 97억 원, 6.1% 증액된 16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국제 한반도 포럼, 광복 80년 기념 통일문화 행사 등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정착기본금을 1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261억 원으로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감액(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태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민주평통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위한 지역 중심의 통일공감대 확산활동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자문위원과 재외동포 네트워크에 기반한 통일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해외 지역조직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22기 민주평통의 격년 주기 사업의 필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25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자료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71억 27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19억 15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267억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와 관련하여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40억 54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 3700만 원, 정보화 사업에 4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 여론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개최, 지역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 4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사업 예산은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정 업무용 PC 보안 강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에 217억 7200만 원, 시설관리에 4억 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자문위원 역량강화 예산은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비 사업에 금년보다 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비, 청소 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25년도 예산안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라는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이상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재외동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0.4% 증가한 10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인건비 102억 원, 기본경비 59억 원, 그리고 사업비 91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주요사업비 828억 원과 정보화 사업비 8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글학교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한글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소외되거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정착 동포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민족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 가족 초청 등을 통해서 사할린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을 계속하고 법정사업인 실태조사를 충분히 실시해서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동포 정착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0월 5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역대급 성과를 이룬 전주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와 같은 행사들이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도울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정책 수요자이자 동반자인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습니다.

현재 동포청은 정상 및 총리외교 등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동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동포청에 편성이 된 만큼 보다 충실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내년에는 24시간 유튜브 라이브 등을 적용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소통을 증진해서 재외동포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출범 2년 차를 맞는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사회가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이 바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 동포청의 주요 사업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가 대표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북 경주시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9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법안에 대해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

치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위원회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임직원 파견과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장에게는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법이 정상회의와 관련 없는 사업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에 여야를 초월하여 191명이라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을 통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1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30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9만 6000여 명에 달하며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기권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동명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연장 동의안을 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얼마 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에서 완충지역을 형성하고 있던 UNIFIL, 즉 유엔평화유지군을 탱크 등을 앞세워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밝히기를

평화유지군 뒤에 숨은 하마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연장 동의안 역시도 이런 결의안과 더불어 심사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외교의 현장에서 정부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강력하게 심사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무력 충돌 중이라도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 피해와 무력 충돌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협안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협안보고 이후 이어질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김선호 국방부차관께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각각 협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협안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으로 파견 중인 우리 동명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1쪽, 배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의 안정과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자 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7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레바논을 방문하고 동명부대의 활동 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9월에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명부대의 파견연장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명부대는 2007년 7월부터 파견되어 왔으며 금년 파견 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현재 동명부대

원 267명과 UNIFIL 사령부 참모장교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선인 블루라인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티르라는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의 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부대는 책임지역에서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의 유입을 감시하고 레바논군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의 지휘체계, 소요 예산 등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동명부대 파견연장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2만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왔으며 PKO 분담금에서도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25년까지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의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유엔의 PKO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레바논 정부와 유엔이 동명부대의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 유엔 평화유지활동 성과평가단 방문 등 여러 계기에 동명부대를 포함한 UNIFIL의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명부대와 UNIFIL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엔도 동명부대가 UNIFIL의 우수 자산으로 UNIFIL 임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동명부대의 지속적인 파견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유엔 모두 동명부대가 의료 지원 등의 인도적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UNIFIL의 일원으로서 레바논 평화안정을 위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과 49개 병력공여국들은 현 정세에도 불구하고 UNIFIL의 임무와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13일 UNIFIL이 현 위치에 주둔하면서 임무와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49개 병력공여국들 가운데 자체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명부대를 단독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의 국제적 평판과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우선 현 레바논 정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양측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도심 공습과 레바논 남부 지상전 개시 등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로켓, 미사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반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레바논인 20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20만 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등 레바논 지역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중재국들을 중심으로 휴전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분쟁 당사자들 간 이견으로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지속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으나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파견된 동명부대를 포함한 UNIFIL의 임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국방부차관이 보고드릴 동명부대 안전대책을 포함 이상 설명드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동명부대의 파견을 1년간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김선호 차관님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차관입니다.

동명부대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명부대는 UNIFIL 통제하에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개시한 이래 5명의 평화유지군이 부상을 입었으나 저희 동명부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명부대는 UNIFIL 작전지역 중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지상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블루라인으로부터는 약 25km 이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명부대 안전 확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명부대원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국방부는 외교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동명부대와 일일 상황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현지 정세 및 부대 안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레바논, 이스라엘 측과 소통하면서 동명부대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및 국방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 측에 동명부대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동명부대는 영외의 작전활동 전부대장 주관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유엔 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병력공여국과의 공조하에 UNIFIL 안전과 관련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현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UNIFIL의 유사시 철수 계획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우리 동명부대도 이에 맞춰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현안보고 안건을 포함해서 오늘 상정한 2025년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및 결의안 등 전체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참고로 오늘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원님들 중에도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 교섭단체 간사 간 사전 협의로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김영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도 매우 유감인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한정애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등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지나고 10월 29일경에 조민호 이사장이 부서장과 팀장을 소집해서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사자는 무릎을 끊고 사과하라고 색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상대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이것은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 증인 선서를 했던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당장 통일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직무정지를 시킨 후에 감사원 감사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소위로 저희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되지를 못해서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긴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의안에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북한 병사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계셨고 또 당국자, 정부 고위 당국자하고 주고받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이런 우려와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게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선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확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급변했고 또 우리가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힘에 의한 평화라든지 아니면 가치외교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우리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지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민주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잘 논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기 예.

○김건 위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빨리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손발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 조치들을 결의안에 담는 것은 정부가 하는 외교적인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심각하게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루빨리 합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에게 오늘 질의할 사항은 대체로론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론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질의순서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야 골고루 순서대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배 간사님이 특별히 말씀이 계셔서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안질의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지난 광복절 행사 때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뉴욕시 주재 광복회 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고 있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만하지요.

저희가 미주반이어서 뉴욕총영사관에 감사를 갔었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영사는 국가의 국격을 대변하는 외교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

으로서 자세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포들을 같이 통합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본인은 '사과할 뜻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다',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좀 옛지있게 해야 언론에서도 제대로 받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말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보다 못한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태도가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분이 무슨 뒷배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세계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눈에 들어서 뉴욕총영사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을까. 그런데 발견을 했습니다.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2000년에 김의환 현 뉴욕총영사가 포럼을 하나 만들니다, 포럼 2020이라고. 지금 현재 이름이 '포럼, 더 나은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이 포럼 2020은 2010년도에 들어서서 한 번 재편을 하는데 그때 대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 업무를 맡아서 관장을 하면서 포럼을 이어 가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대통령실 십상시 중의 1명이라고 하는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건희 현 대통령 부인께서 참여를 하십니다. 김의환의 뒷배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인 거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1이에요. 그리고 실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인사 전횡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도대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 라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이 김건희를 뽑은 것도 아닌데요. 대한민국 특허나 외교라인이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국정을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통령실에 이런 친분으로, 대통령의 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뽑혀 들어가고 핵심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잘리지도 아니하고 해임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오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는 법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였는데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서는 본인이 장관 되시기 전에 이미 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외교부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지금 미국 대선이 끝이 나고 정말로 전 세계는 미증유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인사 전횡을 하고 있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전혀 해임하거나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화, 불안의 요소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는 데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30일 날, 미국 현지 시작으로 10월 30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했던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져 버렸단 말이지요. 이렇게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북한이 핵 고도화했던 2016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튿날 열렸던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비핵화가 빠졌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 4년 만에 새로 채택했던 정강정책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다 삭제되었다. 거기에다가 지난 3월에는 미국 백악관의 선임보좌관이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단 말이지요.

러시아의 외교부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9월 26일 날 자신들의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에게 종결된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만큼 이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꼭 같을 수가 없는 차이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핵 비화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는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과거 4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처럼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때로는 배제시키고 때로는 통미봉남 하겠다는 북한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한 행동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고 그래서 핵 군축협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날 김정은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을 시험발사했고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력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천명한 바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정은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실험을 앞세워서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핵무장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자칫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입장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협상을 해야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김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매번 강조해서 제기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신 충분한 배경과 그것에 대한 충분한 예가 있고 그러나 그에 대한 제답변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려사항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장 합당한 안보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최적의 대안은 확장 억지를 계속 강화해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출국납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의 기재부 발표 자료에 보면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다’ 해서 출국납부금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에 의견조회가 있었지요, 기재부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구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권칠승 위원 의견조회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것도 안 했다면 정말 그것은 정부가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24년 3월이었는데 6개월 전인 23년 9월 달의 기재부 2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에 보면 적합성, 전환 가능성, 효율의 적정성, 감면의 적정성, 적정성 등등등등 해서 전부 적합 판단이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기재부에서 외교부에 의견조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엄청난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아는 한 기재부의 입장은 제가 차관 했을 때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관성 있게 문제 제기해 왔다는 것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일관성 있게 문제 제기했다는 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기재부입니다.

○권칠승 위원 기재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뭐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세 원칙,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기재부 입장 말고요. 기재부에서 외교부에 의견을 조회했을 때 외교부 입장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우리는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그러나 그 원칙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해 왔던 거지요.

○권칠승 위원 그러면 24년 3월 달에는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철회한 건가요, 정부 내부에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지요. 일반예산으로 그것을 보완한다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정부 전체가……

○권칠승 위원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신 거네요.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체 정부의 부담금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것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런 명분으로 하셨어야지.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 ‘기금의 목적과 부담금 징수 대상과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담금과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조세부담으로 하는 어떤 체계의 문제에 동의했다면 그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발표 내용을 보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의견이 되어 있다가 6개월 만에 관련성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해 놓은 목표를 갖고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다 뒤집어엎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것을 관련성 문제를 가지고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칠승 위원 그걸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기재부 자료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로 그냥 소신 없이 부처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저번 현안질의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확정판결의 집행절차 송달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검토 좀 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지 않았는데요.

○권칠승 위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이미 일본이 상고를 포기해서 종결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하셨고요. 그게 뭐냐 하면 송달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집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송달 거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2011년 8월 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법재판소 의견을 보면 부작위에 의한 위헌 판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빨리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번에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다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만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종결된 것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일본이……

○권칠승 위원 우리나라에서 판결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상고를 포기해 가지고 종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지금 포기를 한 거면 그러면 집행되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집행 절차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집행 절차에 대해서 지금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절차적인 문제 뭐가 남아 있는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대구 중구남구 김기웅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다 관련된 사안이기는 한데 외교부장관님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거의 정해지면서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외교안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 여러 가지 하여간 여기저기서,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충분히 이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환율도 오르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해서 국민 불안이랄까 좀 덜어 드릴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입장을 밝힐 수가 없고 미국하고 행정부랑 조율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북미 간에 첫 회담을 할 때 국방부차관도 계시지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미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해지는 거고 서로 입장이 있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번처럼 우리랑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서 하겠다, 안 하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쳐다만 보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지금 경제 부분도 통상 등 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안보도 그렇고 통상·경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그리고 적어도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원칙과 방향은 지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뭐랄까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외국 정상과 통화한 선두그룹 속에 우리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새 당선인이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초 위에서 면담과 이어지는 후속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고 또 말씀하신 경제통상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에 저도 참석해서 일차적인 협의를 가졌고. 거의 주 단위로 저하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신정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우리 주도로 우리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또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각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면밀히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율해 가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아침에 새벽같이 관계장관들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민주평통과 통일부에 관한 지적을 하나 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과 성평등의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아예 없고 분과위원장 중에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에 여성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문위원회도 3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중추기구입니다.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통일부가 포럼을 하나 했는데 20명 발제자가 전부 남성이라서 영국대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지와 의식이 없다는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 본 질문은 파병에 관한 건데요. 마침 국방부차관께서 오셨으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님, 오늘 레바논하고 남수단 파병 연장하러 오셨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이유가 뭡니까? 파병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외교부 사안과 협력 사안이기 때문에 오셨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5명이, NATO하고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 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파병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건 파병이 아닙니다.

○**김준형 위원** 파병이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군의 해외 파병돼 있는 현황을 아십니까? 몇 개국에 몇 명인지 대강 아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4개국에 한.....

○**김준형 위원** 아닙니다. 4개국은..... 그러니까 수백 명이 되는 거고요. 12개국에 998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개 지역 외에는 대부분 1명에서 7명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개인 파병으로 가 있는 겁니다.

○**김준형 위원** 그런데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계속 개인 파병은 국방부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계속 위헌 시비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헌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왜냐하면 모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정부는 시행령 가지고 법률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훈령 따위가 헌법을 뒤집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훈령이 적용될 수 있는 모법은 뭡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고 헌법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 PKO법이고요. PKO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을 지금 훈령에 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형 위원** 두 가지만 맞고 마지막 말씀은 틀렸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 파병이든 군인을 보내는 모든 방법은 세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KO하고 그다음에 다국적군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협의하에서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세 군데 하나도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을 PKO법을 당겨서 쓰는 것이 어떻게 위헌이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러니까 지금 PKO법에는 유엔에 관련된 PKO 파병에 관련된 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 있지 않은 파병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훈령에 있는 개인 파병이 되는 것입니다.

○**김준형 위원** 지금 보시면 모법이 없는데 모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분 포괄적으로 헌법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연장하러 오신 것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파병에 대한 기본적인 연장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장관 대부분..... 이미 5명이 갔습니다. 저는 이것 위헌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헌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의 신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명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병 보냈던 모든 사람들의 내역과 출장과 신분을 밝혀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았는데 이번 5명은 내용을 절대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국방부가

주관하지 않고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KO법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이 국방부장관하고 위임해야 되고 특히 PKO법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의원실에서……

지금 누가 파견돼 있느냐 하면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이 파견돼 있지요, 차관님? 이것은 부인하셨다가 안보실에서 나중에 정정하고 시인했던 부분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준형 위원 이 5명이 불분명하고요. 왜 지금 우리의 육군 탄약정책담당관이 NATO에 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까? 이것은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PKO법은 유엔의 PKO 파견에 관련된 것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국적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관련된 파병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10년도에 PKO법이 만들어질 때 이어서 국방부 훈령으로 해외 파병에 관련된 훈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단위의 부대 파병에 대한 것과 이렇게 다국적 협력을 위한 개인 파병에 관한, 개인 파병을 훈령에 넣어서 이것들을 보강하기 위한 법입니다.

○김준형 위원 매우 심각합니다. 훈령 따위가 헌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차관님, 방금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건지 차관을 하시기에는 좀 역량이 부적절하신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KO법이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하위법에서는 뭐든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체계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평화유지군 뒤에 하마스가 숨어 있나요? 우리 동명부대 뒤에 하마스가 숨어 있나요?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정 위원 예,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에 동의한 적 없지요.

지난 국감 때 제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하느냐 했더니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장관님이 아시는 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방사청장은 그 이후에 어떤 무기 수출 제한과 규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사실상 관련된 부품이 수출되고 있는 것 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에 대한 수출 이외에……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한이 없다는 것과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지요.

○이재정 위원 ‘제가 수출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수출 이외에 무기 이전이나 양도, 대여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가 아울러 저는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이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양도나 대여가 되는 것, 이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스라엘 전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동명부대에 파견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것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우리 동명부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가지지구에서 즉각적인·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드린 외교의 일관성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는 방식으로 외교와 또 국방정책을, 무기 수출정책을 취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김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 5명이 이미 사망을 했고 부상자도 있고 관련된 시설의 파괴도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이스라엘의 태도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부대 파견 동의안, 저는 UNIFIL의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 역할을 했는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취해야 될 입장 그리고 또 우리가 무기 수출이나 이전 등에 관련해서 전혀 통제할 법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 조금 전 질의에서도 제가 아연실색한 것이 어떻게 법률안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훈령에서 없으니까 생산했다라는 말을 그것도 가장 강력한 권력인 군을 관여하는 차관께서 하실 수 있는지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질병퇴치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는데 국회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까? 퇴치기금 결정 다 해 놓고…… 어쨌든 지금 폐지 법안 올라왔는데 동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비효율적인 양 앞서 다투어 우리 외교부도 한 건 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위원 지금 질병관리청장도 반대하거든요.

지금 대체토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K-방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백스에 기여한 부분 등등 보건 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매년 기재부에 줄라서, 읍소해서 받아야 되는 예산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기금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기금을 이렇게 손쉽게 없애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더 안정적인 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재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폐지에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에 기대는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부응하는 것은 지금 무기를 통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라든지 기타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등을 통해서 요청받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정말 뒤로 하고 오로지 지금 군사놀이에만 천착하고 있는 외교 같아서 씹쓸한 오늘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반 ODA 보건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정 위원** 그게 어떻게 매번, 매해……

○**외교부장관 조태열** 매번이 아니고 더 안정적이지요. 예산으로 되는 것하고 질병퇴치 기금 각 국민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하고 어떻게……

○**이재정 위원** 기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동의하지 못한다는데 국회하고 상의 한 번 없이 폐지 법안만 들고 와서 해 달라는 걸 어떻게 저희가 동의합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통법부입니까? 정부의 지령 하달에 따르는 통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국방부차관님, 안 보여요.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윤후덕 위원** 오랜만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동명부대에 대해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이 미사일로 공격하고 그런 적은 없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다른 평화유지군이 몇 명 다치고 그랬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현재 5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확전이 되면 우리 동명부대도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이 지역이 확전이 되면 그런 것까지는 가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후덕 위원** 무사히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보인 김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윤후덕 위원** 지금 실제 전투가 있었어요? 사상자가 있어요? 아니면 포로가 있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 확인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 대사관에도 무관이 나가 있고 또 5명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보 파악을 안 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말씀하시는 5명이 어떤 5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후덕 위원** 아니, 전황에 대해서 북한군이 전투를 했고 어느 정도 죽었고 포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정도는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이렇게 갔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최초에 정부 대표단으로 갔던 인원들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이 아닙니다.

○ 윤후덕 위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무관이 몇 분 계시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우크라이나에는 무관이 1명 있습니다.

○ 윤후덕 위원 1명 있지요. 그 사람 뭐 해요? 이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했는지 사상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해 줘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 정보본부가 그런 것들은 무관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윤후덕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그쪽 대사관으로부터 이런 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요?

○ 외교부장관 조태열 일반적인 보고를 받습니다만 세세한 전장 상황에 관한 보고까지는 깊이 있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후덕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님도 거기 대사관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고 또 국방부차관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투가 이루어지고 부상자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융합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확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후덕 위원 그것도 애매하네요. 아직은 전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국방부차관님, 트럼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알기로는 당선이 되면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후덕 위원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현 정부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에 의하면 이 전쟁의 양상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자—당선자지요—입장이 뭔지도 확인하면서 우리의 의견과 또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나서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려요. 외교부장관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국방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차관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것들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 윤후덕 위원 예, 됐어요.

○ 위원장 김석기 차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 윤후덕 위원 외교부장관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거지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하루 만에 종식시키겠다라는 것은 기대가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관세를 모든 나라에게 10%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 윤후덕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SMA 방위비분담금을 이번 월요일 날 서명을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운동 하면서 이것을 100억 불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려가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태열** 꺼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 꺼내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먼저 문제를 얘기해서 걱정거리를 만들면 어텐션이 가는 것이고 그것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외교적 노력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 저는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비판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최고위에서도 우리 언론이 다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 민주당하고 미국 공화당하고 사실 외교, 무역, 군사, 외국에 있는 군사력에 대한 정책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70년 전의 6·25 때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제가 외교부장관님하고 외교 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 뉴욕에서 훈련을 4년 받았기 때문에 브루클린, 트럼프 출신을 잘 압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문화가. 미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뉴욕 특히 브루클린 쪽 사람들을 예의없는 사람, 굉장히 말투가 거칠고…… 우리도 외교가 짐잖은 외교에서 뭔가 요구해 왔을 때 굉장히 세게 우리 요구도 해야 됩니다. 요구할 것 많지요. 앞으로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3조 원을 더 요구하는 것, 트럼프 8년 전의 행동을 보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벽을 세우는데 멕시코가 다 돈을 낼 것이다, 멕시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뻥이 좀 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업자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출신을 잘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분이 던져놓는 데 우리도 짐잖은 유교 문화적인 대응보다는 터프하게 나가는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 또 외교부장관 또 차관님, 북한 문제예요. 이분이 어쨌든 간 김정은하고 관계가 가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패싱이 될까 봐, 북쪽하고 미국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되고, 당사자가 우리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쪽하고의 관계 개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미 개선도 있지만 우리가 패싱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앤디 김이라는 상원, 상원에 드디어 원래 한국인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또 하원에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선이 며칠 안으로 결정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미국 쪽에 네트워킹도 하고 어쨌든 영어 표현으로 하면 프로액티브(proactive)라고 해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따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지원을 했던 게 백신 개발 및 보급이지 않습니까. 그게 KOICA에서 하는 다른 나라에 고속도로나 이런 인프라를 까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팬데믹 때 지원을 받았던 기관들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질병이 퍼지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정망 역할을 하는 기금들입니다.

그랬을 때 장관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하시면서 보건의료 ODA를……

○**외교부장관 조태열** 부담 완화가 아니라 세금에서 써야 될 돈을 그런 식의 모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차지호 위원** 왜 질병퇴치기금을 이노베이트 파이낸싱 모델(innovate financing model)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압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혁신성은 둘째치고라도 국민 부담으로 치면 사실 국제질병퇴치 기금은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를 하니까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차지호 위원** 저희가 국제선 여객 중에 내국인 비율과 외국인 비율을 대략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모릅니다.

○**차지호 위원** 정확한, 현재 통계는 2019년도 통계고 코로나 전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비율이 한 60%, 외국인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거둬들였던 전체 4250억 원 중에 약 1600억 정도를 외국인이 부담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ODA,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기금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1600억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폐지해야 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혁신적인 방법에 의한 개발……

○**차지호 위원**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질의가 아니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질병퇴치기금이 사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삼고 안정성을 명분으로 삼는데 거의 1600억 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추가로 투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폭탄들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은 여기에 사실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미 관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전, 지금의 행정부랑 굉장히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 아니면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 혹은 평화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기 지원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때도 한국은 무기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미국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뱉어 놓은 말씀이 어떻게 정책으로 될지는 두고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1월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고요.

○차지호 위원 그러면 한국은 계속 군사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정책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대통령님이나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차지호 위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우리의 입장은 정한다는 얘기였지 거기에 어떤……

○차지호 위원 그러면 평화적인 수단만을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은 정리한 것입니다.

○차지호 위원 어쨌든 저는 여전히 한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개입 명분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러시아가 한국의 적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리 적국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와……

○외교부장관 조태열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한 나라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군사적 지원을……평화적 수단은 논리가 돼요, 인도적 지원이나. 그런데 군사적 개입을 옵션을 열어 놓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 군사적 지원 하는 다른 나라는 그것 왜 하는 겁니까?

○차지호 위원 우크라이나, 한국이 따로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NATO처럼 러시아랑 국경을 잇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장관 조태열 NATO가 우크라이나와 동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지호 위원 한반도에 무슨 이익이 됩니까? 우리 군사적 안정에, 안보 안정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국민이……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태 지역,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안이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모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차지호 위원 국민이 이렇게 전쟁 위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간사님 남았는데 김영배 간사님 먼저 하시지요.

○김영배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김영배 위원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인 신분의 5명이 아까 갔다고 돼 있는데요 공식 이름이 뭡니까? 참관단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대표단입니다.

○김영배 위원 대표단?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단장이 있겠네요. 단장이 누구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개인적인 게 아니지요. 대표단이면 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영배 위원 공무원이 어떤 직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갔다 이게 없는 출장은 없잖아요. 예산, 세금을 써서 출장 간 것 아닙니까? 대표단이라면서요? 단장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단장은 저희 정부 요원들 중에서 편성을 해서 갔고요. 그게 개인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대표단의 임무가 뭡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대표단은 현지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대표단이라고 하는 게 앞에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무슨 대표단이라고. 무슨 대표단이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냥 한 층 대표단으로 저는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방부가 주관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차관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어느 부처가 주도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주도가 됐고 저희들은.....

○김영배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님, 외교부가 주관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국정원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국정원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정원의 간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외교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면 행정안전부일 리는 없잖아요. 문화부일 리도 없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NSC 회의를 거쳤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정원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러면 정보위에서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상 이것을 파병으로 본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법적 논쟁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대표단 말씀입니까?

○김영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NATO에 브리핑하러 간 대표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배 위원 예.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파병이 아니지요. 정부 대표단……

○김영배 위원 파병으로 안 본다 이 말이지요? 아까 국방부차관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NATO하고 EU에 브리핑하러 갔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브리핑하는 대표단. 아까 차관이 말씀……

국방부차관님, 그 대표단 얘기하시는 건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지요.

외교부장관님, 23년도에 미국 국방부에서 기밀문서 유출자가 미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잭 테세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소 내용이 뭐냐면 기밀문건 유출 및 배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밀문서가 유출이 됐다고 하고 기소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출된 기밀문서가 그동안 장관께서도 위조된 문서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위조된 문서로 보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답변한 적이 없고 아마 제 전임자가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배 위원 위조된 문서로 보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다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위조문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그 포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고민이다, 그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포탄을 주는 것인니까 폴란드에다가 33만 발의 포탄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는 거거든요.

이미 2023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녹취, 그러니까 비밀문서로 미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불법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살상무기를 2023년도부터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 확인해 봐야,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배 위원** 내용의 진위 여부는 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민의힘 김건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게 첨단 군사기술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예단할 증거는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공개적으로도 러시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표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때 러시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반응을 무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공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아는 러시아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은 제삼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입장을 계속 최소한도 대외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해 제삼자라고 하면 거기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일종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억지력으로?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빨칵 놀라서 반응하는 것이 한국이 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그것은 자기들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서로의 행동을 좀 억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여러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은 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외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외교 활동 그다음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전달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를 돋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러·북 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규탄하는 명확한 결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다음에는 국방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왜 빠진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문구 안에 그걸 했고 이번에 한 것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핵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기조가 본문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함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한미 국방 당국 사이에서의 협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공동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SCM 협상에서 그런 것을 담지 않은, 담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 언론에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제가 잘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앞으로 SCM 문안 협의의 과정에서는 꼭 외교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실수가 좀 없도록, 아니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준형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간사님 하시고.

○**윤후덕 위원** 예산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 김석기** 예, 하시지요.

3분입니다, 시간은.

○**윤후덕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KOICA의 ODA 사업의 금년도 9월 말까지 집행률이 46.4% 정도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62%, 63% 정도의 집행률이 있었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대체로 한 30% 정도가 불용되고 또는 이월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잘하는 사업은 있는데 엉망인 사업들이 있고 또 내년에는 신규 사업들이 제법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류하고 또 심사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알기로는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져서 아마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는 이게 도저히 안 돼요. 3/4분기가 됐는데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냥 막 써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 때문에 지연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심사하면서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재단에서 정으로 승격됐는데 오히려 동포업무 전담 인력이 여러 공관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 7개 정도는 이렇게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과 예산이 좀 확보돼야 돼요. 이것은 한 7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부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여러 개를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심사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위원** 차관님, 아까 모범이 없으면 모범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차관님 답변 중에 국방부가 주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 10월 17일 날 NATO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에 노동 인력일 것이라고 답변한 적 있으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것은 병력인지 또 민간 인력인지에 대한 것을……

○**김준형 위원**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국정원과 NSC가 이것을 뒤집고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국방부나 외교부가 지금은 주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NATO만 간 것으로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출장 내역과 거기에 간 인원이 밝혀져야 되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갔던 어떤 출장 내역도 다 밝혔는데 이번에 밝히지 않는 게 너무나 의심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파병 담당자는 다 자리에 있고 무기 관련자만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NATO에만 갔다는 것도 부정화합니다.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심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 출장 내역 반드시 밝혀야지 이게 파병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외교부장관님께서 국제법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고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그것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 군사적 개입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준형 위원** 국제법 위반했기 때문에 적국이 돼야 된다든지 그 논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외교부장관 조태열 적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준형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UN이 승인하느냐…… 저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러 경제제재 하는 것만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의 국격에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사적 개입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주려 한국대사가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이도훈 대사입니다.

○김준형 위원 뭐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위원 열심히 소통하는데 여기에는 게오르기 대사가, 물론 내부에서 소통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론전 차원을 유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한려 외교 채널이 살아 있는데 자꾸 우크라이나 쪽에만 계속 지원을 하면서, 북려 협약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한려 관계의 채널이 살아 있는데 이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외교를 통한 여론전을 통해서 러시아를 자제시키는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러시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김준형 위원 그런데 이도훈 대사가 지금 모스크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적어도 여론전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제 대사가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하면 모를까.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윤 대통령께서요 아까 10월 24일 날 폴란드 대통령 만나시고 나서, 그때 장관님 거기에 배석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우리 상임위 빠지면서 저희들이 양해를 해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은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유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살상무기를 지원할 거냐라는 폴란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습니다.

○김영배 위원 유연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상황에 따라서……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검토 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성이 높다, 실현 가능성성이 높다 보통 이렇게들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영배 위원 상황 말씀하시지 말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

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이십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도청 사건 말씀드렸듯이 김성한 초대 국가안보 실장이 이문희 외교비서관과 나눈 대화에서 김성한 실장이 먼저 제안하는 게 바로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형식의 살상무기 지원을 사실상 이때 먼저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10월 30일 날 말이에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께서 한 인터뷰에서 ‘지금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호크(HAWK)라고 하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진위 여부, 사실관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국방부차관님, 유용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입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배 위원** 검토한 적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김영배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 안건이나 회의에서 거론된 바도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구체적인 무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NSC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장관님, NSC에서도 이런 내용이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저는 그때 장관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관계를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것은 아마 NSC에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아니요. 그 당시의 의견을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NSC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요,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조태열**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영배 위원** 확실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고개를 끄덕임)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IRA법도 폐기를 하겠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재고하겠다 등의 경제적 문제부터 SMA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 분명치 않고요. 휴전, 종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레토릭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그런 조약에 의해서 지금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다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 조약과의 연관성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파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것은 확인된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그 파병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것도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른다. 가령 북한에서 파병되어 간 인력들이 어떤 정도의 전투에 개입하고 어떤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북한 내부에서의 민심의 동요나 여론의 향배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과 아울러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또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또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 또 핵잠수함에 관련된 기술, ICBM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또 그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많은 자금을 주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칠지 모르는데 우리가 손발을 묶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것이고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제삼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지요. 제삼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김기현 위원 그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손발을 묶어 놓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기 짹이 없는 정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살상무기 논의 같은 것도 앞으로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닫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함께 있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또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 그것은 가장 고도의 전문성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기현 위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줌으로써 북한과 러시아의 보다 더 긴밀한 관계라든지 북한의……

저 1분만 주시면, 3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예, 쓰시지요.

○김기현 위원 북한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제지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민의힘 김건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첨단군사기술을 다른 나라에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한테도 잘 제공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지금 북한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지만 러시아가 그것을 제공하게 되면 러시아의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기술을 얻으면 그걸로 무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각 지역의 테러리스트에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국제 정세를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통제가 안 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봐도, 중국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주고 싶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미래는 대한민국과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경제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려면 한국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하고 이게 또 러시아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예.

○김건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러시아로 하여금 첨단군사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북한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다든가 하여튼 하나의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는 안 하겠다, 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결국은 러시아의 대북 첨단군사기술 지원을 막는 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어떤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잘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태열 위원님 생각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김영배 위원님 마지막 1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외교부장관님, 러시아-북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정원 차장도 가고 이러면서, 먼저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도 선도적으로 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편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에 트럼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불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었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나서서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북한 문제 포함해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제가 워싱턴 가서 2+2 회담도 했고 한미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했고 거기서 충분히, 모든 것에 우리와 조율돼서 해야 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전혀 그런 불만이나 표시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 위원 러시아하고 북한이, 특히 북한이 저렇게 행동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에는 미국하고 빅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더 큰 지렛대를 갖기 위한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측과의 협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한국 정부가 패싱당할 우려가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태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야당과도 이런 국가 전략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장관님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꼭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1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웅 위원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유용원 의원님 호크 미사일 얘기가 나오면서 살상무기라고 그냥 통칭을 하니까, 누가 다치면 살상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방어용 무기랑 공격용 무기로 구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뢰를 생각해 보면 지뢰를 밟은 사람은 죽잖아요, 다칠 수 있고. 그러면 지뢰가 살상용 무기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는 구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누가 다칠 수 있으면 다 살상용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을 포괄적으로 ‘누가 다치면 그런 것 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사실 대부분 국가들은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공격용 무기 해서 개념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장관님이나 국방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차관님이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살상무기보다는 공격과 방어라는 용어, 용도에 맞는 무기로 구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46항까지의 법률안 등 44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건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인요한 위원님, 김석기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오후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문에서 공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2시 이곳 전체회의장에서 미국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하고 통일부 해서 감사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간사 간에 협의해 달라고 말씀……

○위원장 김석기 상의를 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김영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8인)	권칠승 위성락 이용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4)
	◎김 건 김기웅 인요한	국민의 힘(3)
	김준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2인)	◎김영배 윤후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7)
	김 건 김기웅 김태호 안철수 윤상현	국민의 힘(5)
청원심사(4인)	◎이용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2)
	김기현	국민의 힘(1)
	김준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1인)

권칠승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석기 김영배 김준형 김태호 안철수 위성락
윤상현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명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태열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의전기획관 권재환
유럽국장 임형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이철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한반도정책국장 이준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상근이사 임재훈

통일부

장관 김영호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강연서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위원지원국장직무대리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조민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정낙근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김민철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국방부

차관 김선호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9월 20일 회부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9월 25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6.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9월 27일 회부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30.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0월 2일 회부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5)

10월 7일 회부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2024. 10. 7.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10월 8일 회부됨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24. 10.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1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024. 10.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13)

이상 2건 10월 10일 회부됨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2024. 10. 10. 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번호 2204644)

10월 11일 회부됨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2024. 10. 21. 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10월 22일 회부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2024. 10. 24.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10월 25일 회부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9)

10월 28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8.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8)

10월 29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9)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

(2024. 10. 29. 김영배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이상 2건 10월 30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2)

10월 31일 회부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4.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3)

11월 5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4. 9. 9. 기획재정부 제출)

9월 10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BBNJ) 협정 비준 촉구 건의문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건의문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결의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문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 중단 및 남북대화 촉구 성명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외교부령 제13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2024. 9. 24.	2024. 9. 25.
외교부훈령 제223호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9. 27.	2024. 9. 27.
대통령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9. 20.	2024. 9. 24.
대통령령 제3490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2024. 9. 26.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 9. 26.	2024. 9. 27.
외교부령 제13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4. 9. 26.	2024. 9. 26.
외교부령 제139호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안	2024. 9. 27.	2024. 9. 27.
외교부예규 제26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2024. 6. 25.	2024. 10. 7.
외교부고시 제2024-6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2024. 10. 12.	2024. 10. 16.
외교부훈령 제224호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24. 10. 2.	2024. 10. 7.
외교부훈령 제225호	외교부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안)	2024. 10. 11.	2024. 10. 14.
외교부훈령 제226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2024. 10. 18.	2024. 10. 25.
외교부훈령 제227호	자율기구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10. 31.	2024. 10. 30.
외교부예규 제275호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2024. 10. 30.	2024. 10. 31.
외교부예규 제274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2024. 10. 30.	2024. 11. 5.
법제처공고 제2024-200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4. 11. 1.	2024. 11. 4.
통일부훈령 제699호	자율기구 “자립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4. 9. 2.	2024. 9. 13.
통일부훈령 제700호	자율기구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4. 9. 2.	2024.09. 13.
통일부훈령 제701호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2024. 9. 11.	2024. 9. 13.

	일부개정훈령		
국립통일교육원훈령 제11호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 9. 6.	2024. 9. 13.
국립통일교육원훈령 제12호	국립통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2024. 9. 11.	2024. 9. 13.
통일부예규 제89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일부개정예규	2024. 10. 2.	2024. 10. 14.
통일부훈령 제702호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 10. 14.	2024. 10. 14.
통일부훈령 제703호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4. 10. 21.	2024. 11. 1.
통일부예규 제89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024. 11. 1.	2024. 11. 1.
재외동포청훈령 제33호	재외동포청 자체감사 규정	2024. 9. 13.	2024. 9. 25.
재외동포청훈령 제34호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2024. 10. 29.	2024. 10. 31.

○보고서 제출

2024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2024. 9. 12. 재외동포청 제출)

국제교류기금 2024년도 3분기 운용계획 변경명세서

(2024. 9. 13. 외교부 제출)

재외동포청 2024년 3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4. 10. 30. 재외동포청 제출)

2024년 3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4. 10. 31. 외교부 제출)